

협력사 행동강령
Supplier Code of Conduct

2025. 02. 12

KUMHO
TIRE

목차

1. 개요.....	1
2. 적용범위	1
3.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1
4. 인권·노동	2
5. 안전·보건	3
6. 환경.....	3
7. 윤리.....	4
8. 책임있는 원재료 취득.....	5
9. 경영시스템.....	6
10. 실천방법.....	6
금호타이어 협력사 행동강령 동의서.....	7

1. 개요

금호타이어(이하 그 계열회사를 포함함)는 'Your Smart Mobility Partner'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글로벌 가이드라인, 법·제도를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며, 금호타이어와 협력사가 상호 노력을 통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이행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를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유엔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 강령과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규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적용범위

본 행동강령은 금호타이어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금호타이어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내협력사를 포함하여 금호타이어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원재료 공급사, 설비/시공사, 위탁사 등)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에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3.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협력사는 경영의 의사결정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본 행동강령의 준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및 금호타이어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국내외 법규 및 협약에 따라 협력사를 점검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위와 같은 점검 또는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금호타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가 협력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본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금호타이어와의 거래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사의 준수사항 일체를 명시한 문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본 행동강령은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가 본 행동강

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인권·노동

- 1)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 및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및 ILO가이드라인 등 국제수준의 규범과 국가별 현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관점과 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성별, 인종, 나이, 피부색, 종교, 혼인상태,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장애 여부, 성지향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4)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며 비합법적인 민간 또는 공권력 동원 등을 통해 결사 및 단체 교섭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및 결정,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협력사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며, 임산부 및 수유중인 여성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모성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대상자는 업무 배치,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6)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압이나 위협 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7)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해 모든 사업장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합니다. 협력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처(하위 협력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8) 협력사는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직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9) 협력사는 국가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정당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0) 협력사는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차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지양해야 합니다.
- 11) 협력사는 채용 과정에서 부패, 뇌물, 연고주의를 방지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차별 없이 지원자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또는 채용 에이전시) 임직원에게 고용을 명분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5. 안전·보건

- 1) 협력사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가별 법·제도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계획·절차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 2)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3)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4) 임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하여야 하며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 5)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6)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6. 환경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와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탄소 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고효율 설비 도입 등)
- 3)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오염물질 관련법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련법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 협력사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 인허가, 운영,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6)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관련법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자원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7) 협력사는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보호, 토양보전, 토양오염물질 방지 및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8) 협력사는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소재지 내의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윤리

- 1) 협력사는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며, 공급망 내 모든 거래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그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합니다.
- 3) 협력사는 당사를 포함해 공급망 내 모든 거래관계 대상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내부정보, 기술/노하우 등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위조부품 또는 무허가 원료 및 부품을 사용하거나 생산,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원료 및 부품을 구매하여 위조품 유통을 방지 합니다.

- 5) 협력사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6) 협력사의 임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 수수나 뇌물 또는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 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공급망 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정보 공시를 통해 재무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 7) 기업의 주요 정보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는 협력사의 윤리·환경·노동·인권·안전보건·정보보안 등의 관리실태 및 경영활동, 지배구조,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8)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9) 협력사는 국가별 수출 규제와 경제 제재 법규를 준수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 10)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환경·노동·인권·안전보건·정보보안 등 관련 내규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해 신고·제보를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8. 책임있는 원재료 취득

- 1) 협력사는 원재료·제품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분쟁지역 및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지원 또는 도움을 주는 국가에서 취득되지 않았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원재료·제품의 공급사슬 내에서 강제노동, 지역 원주민 주거권 등 인권 침해나 토지, 산림, 수자원 등 환경 훼손 등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예방 및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원재료·제품의 공급사슬과 관련하여 유관 국가별로 관련 법령 등 규제(토지 사용, 환경, 산림 벌채, 노동권, 인권, 세금, 부패방지, 무역, 관세 등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와 당사가 요구하는 여하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합니다.

- 4) EUDR 을 준수한 천연고무를 공급하는 협력사는 당해 천연고무가 2020. 12. 31. 이후 별채된 산림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당해 천연고무(EUDR 이 적용되거나, EUDR 이 적용되는 품목을 포함하는 기타 상품 또는 제품을 포함함)가 생산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경영시스템

- 1)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권,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등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리스크의 최소화와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준수 의지의 표명, 개선 목표의 수립과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이해관계자에 대한 성과 공유 등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협력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기록 작성 및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고충 사항 발생시 금호타이어 사이버 제보실 (cyberreport.kumhotire.co.kr)을 통해 신속하게 접수해야 하며, 금호타이어는 고충 제기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해결된 고충에 대한 결과와 사후 관리 내용을 공유 합니다.

10. 실천방법

- 1)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이행할 수 있는 절차나 관리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일 격차가 있는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활동을 보완해야 합니다.
- 2) 협력사의 본 행동강령 실천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에 대하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서명	협력사 행동강령		
버전	Rev.0	제정일자	2022.08.09
	Rev.1	개정일자	2023.04.25
	Rev.2	개정일자	2024.06.05
	Rev.3	개정일자	2024.07.15
	Rev.4	개정일자	2025.02.12
담당부서	G.원재료구매팀 (jjh@kumhotire.com)		

